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7. 11 선고 2021가합1038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박혜숙, 조상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연

변 론 종 결 2023. 5. 9.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1. 4. 6. 접수 제227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1. 4. 6.

접수 제227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안의 배경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는 C와 금전 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21. 4. 6. 당시 배우자였던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4. 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3. 28.경부터 2020. 9. 28.경까지 C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하여 해당 금액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6, 제7, 8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20. 3. 28.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D 계좌를 거쳐 C 계좌로 돈이 입금되거나, D 계좌에서 C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방법으로 C에게 합계

129,500,000원이 전달된 사실, 각 돈이 이체될 무렵 C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20. 9. 29. C가 소유하였던 충남 예산군 E, F, G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가 2021. 2. 26. 위 등기를 말소하여 주었고 C는 의료법인 H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가 2021. 4. 24.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16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인 15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액수와 금융거래자료에서 나타나는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C는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로부터 원고의 대여금 채권 소멸이 추단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의 계좌로부터 D의 계좌로 2020. 7. 8.경부터 2021. 6. 29.경까지 합계 79,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원고에게 전달되는 등 위 돈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 C에게 거둬 담보제공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인 2021. 4. 24. 원고에게 차용금을 160,000,000으로 기재한 차용증(갑 제5호증의 6)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원고에게 차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내용을 부인 또는 변경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

원고는 C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1. 4. 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나. C의 무자력 여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또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 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1) C의 적극재산

을 제7호증의 2,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I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J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회신, K조합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C는 아래와 같이 다수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1. 4. 2. 기준 그 평가액 합계는 1,402,212,13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적극재산	가액(원)
1	아산시 L아파트, M호	60,000,000
2	아산시 N 전 1,084㎡ 중 5분의 1 지분	30,135,200
3	아산시 O 임야 163㎡ 중 5분의 1 지분	1,793,000
4	J 계좌 유가증권 총액	1,226,284,885
5	J 계좌 예수금	5,019,050
6	P에 대한 채권	78,980,000
합계		1,402,212,135

원고는 P에 대한 채권을 C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1 내지 14호증,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는 K조합으로부터 2019. 5. 22. 65,000,000원, 2020. 1. 21.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Q 소유 아산시 R 답 196㎡에 관하여 채무자를 C, K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019. 5. 22.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 2020. 1. 21.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 2019. 5. 22. K조합으로부터 C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약 6분 후 P의 S조합 계좌로 62,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2020. 1. 21. K조합으로부터 C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약 3시간 후 P의 S조합 계좌로 19,940,000원이 이체된 사실, P은 2019. 6.경부터 매월 위 양 대출금의 이자 또는 원리금 상당액을 C의 계좌에 입금하다가 C를 대신하여 2022. 9. 22.에는 2020. 1. 21.자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고 2022. 9. 26.에는 2019. 5. 22.자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한 사실, 2021. 4. 2. 기준 K조합에 대한 C의 대출금 잔액은 78,9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C는 K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전액을 P에게 대여하여 P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는데, P 측이 K조합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고 P이 이 사건 증여 전후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당액을 C에게 꾸준히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P에 대한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C의 적극재산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C의 소극재산

아산세무서장의 과세정보회신, 아산시장의 사실조회 회신, K조합의 금융거래정보회신, J증권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C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35,599,79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순번	소극재산	가액(원)
1	국세 채납액	69,320,230
2	지방세 채납액	7,201,040
3	J 단기성대출금	518,399,285
4	J 장기성대출금	511,699,242
5	K조합 대출금	78,980,000
6	원고에 대한 채무	150,000,000
합계		1,335,599,79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무렵 C가 D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C와 D 사이에 다수의 금융거래가 계속되어 왔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에 대한 C의 채무의 존재 및 그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채무초과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66,612,338원(=1,402,212,135원-1,335,599,797원)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C가 무자력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의 여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406조 제1항).

C의 P에 대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가사 이를 제외하더라도 C의 적극재산 금액은 1,323,232,135원으로 소극재산 금액 1,335,599,797원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전체 재산규모 대비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금액(12,367,662원=1,335,599,797원-1,323,232,135원)의 비중이 미미하여 피고 입장에서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금액 및 많고 적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계좌로부터 D의 계좌로 2020. 7. 8.경부터 2021. 6. 29.경까지 송금된 합계 79,000,000원(이 사건 증여일인 2021. 4. 2.까지의 송금액은 합계 65,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C가 D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C와 피고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가장하여 체결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C와 피고가 부부관계였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C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에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대한 보상 겸 재산분할을 위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뒤집고 이 사건 증여가 그 실질적인 법률상 효과를 의도하지 않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아람, 판사 육은령, 판사 정희진

별지

목 록

1. 아산시 대 262.5㎡

999/1,000 지분

2. 아산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129.79㎡

2층 151.63㎡

3층 105.52㎡

1/2 지분

